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31

발의연월일: 2023. 6. 8.

발 의 자: 안호영·위성곤·신정훈

한병도 • 유기홍 • 소병훈

윤준병 • 박영순 • 조정식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 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의 지정과 행위 제한 규정을 두어,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또는 산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에서는 문화재나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의 일부 행위만 허용되고 건축물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매장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매장문화재나 유적의 훼손을 방지 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 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호지역 매장문화재 에 대하여는 발굴을 허용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 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및 제7조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설치"를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
	<u></u> 이
<u><신 설></u>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	①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	
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	
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	
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5
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	
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u>설치</u>	<u>설치,</u>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
	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